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0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이종배・이정문・김소희

박형수 · 김용태 · 유상범

김성원 • 안호영 • 김정재

김한규 · 정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입찰시장 관리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거래 관련", "안전 관련" 기관·단체·법인일 것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소유통전담기관'의경우 그 지정 요건을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생산·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업무에 적합한 기관·단체·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의견

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상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적합한 기관·단체·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

법률 제 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소사업"을 "수소사업 또는 에너지수급·유통 관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 두</u>)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수소사업</u> 관련 기관	<u>수소사업 또는 에너지</u>
·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	<u> 수급·유통 관리</u>
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	
다.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